

2020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제 2 회 추 가 경 정 예 산 안

검 토 보 고

I. 추경예산안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2) 의안번호 : 제1481호

3) 제출일자 : 2020년 5월 4일

4) 회부일자 : 2020년 5월 4일

5) 추경예산 편성 사유

- 시민들의 힘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완화되는 추세이나, 이로 인해 소비심리 위축, 자영업자 매출감소 등 경제적 충격이 극심한 상황임
- 이에 서울시에서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직접지원방식의 재정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생계 지원을 강화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하며, 이와 동반하여 재원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감추경을 추진

2. 추경예산안 총괄

□ 세입예산안

- 2020년도 제2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조 7,570억 2백만원보다 △1,332억 96백만원(△7.6%)이 감소한 1조 6,237억 6백만원으로 편성됨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00억 10백만원으로 예산증감 없음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3,946억 2백만원보다 △953억 96백만원 (△6.8%) 감소한 1조 2,992억 6백만원으로 편성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23억 11백만원보다 △379억원(△16.3%) 감소한 1,944억 11백만원으로 편성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00억 79백만원으로 예산증감 없음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0억원으로 예산증감 없음

【도시교통실 세입예산안】

(단위:백만원)

회 계 별	제2회 추경예산액(A)	2020년 기정예산액(B)	비교증감 (A-B)	증가율 (%)
총 계	1,623,706	1,757,002	△133,296	△7.6%
일 반 회 계	80,010	80,010	-	-
교통사업특별회계	1,299,206	1,394,602	△95,396	△6.8%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94,411	232,311	△37,900	△16.3%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40,079	40,079	-	-
도시개발특별회계	10,000	10,000	-	-

□ **세출예산안**

- 2020년도 제2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조 2,004억 85백만원 대비 △1,934억 37백만원(△6.0%)이 감소한 3조 70억 48백만원이 편성됨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523억 9백만원보다 △957억 96백만원(△17.3%)이 감소한 4,565억 13백만원으로 편성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3,688억 65백만원보다 △953억 96백만원(△7.0%)이 감소한 1조 2,734억 69백만원으로 편성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23억 29백만원으로 예산변동 없음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1,279억 13백만원으로 예산변동 없음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90억 69백만원보다 △22억 45백만원(△2.8%)이 감소한 768억 24백만원으로 편성

【도시교통실 세출예산안】

(단위:백만원)

회 계 별	제2회 추경예산액(A)	2020년 기정예산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
총 계	3,007,048	3,200,485	△193,437	△6.0%
일 반 회 계	456,513	552,309	△95,796	△17.3%
교통사업특별회계	1,273,469	1,368,865	△95,396	△7.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72,329	72,329	-	0.0%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127,913	1,127,913	-	0.0%
도시개발특별회계	76,824	79,069	△2,245	△2.8%

II. 회계별 세입 · 세출예산안

1.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안 : 별도 계상내역 없음

나. 세출예산안

〈증액 내역〉 : 없음

〈감액 내역〉 : 3건, △957억 96백만원

-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 △773억 96백만원
-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 △180억원
-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 △4억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제2회 추경예산액(A)	2020년 기정예산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
총 계	456,513	552,309	△95,796	△17.3%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	414,155	491,551	△77,396	△15.7%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	-	18,000	△18,000	△100%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	1,881	2,281	△400	△17.5%

2. 교통사업특별회계

가. 세입예산안

〈증액 내역〉 : 1건, 1,000억원

- 순세계잉여금(교통관리계정) 1,000억원

〈감액 내역〉 : 3건, △1,953억 96백만원

- 일반회계 일반전입금 △180억원
- 일반회계 법정전입금 △773억 96백만원
-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1,000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액(A)	2020년 기정예산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
총 계	1,299,206	1,394,602	△95,396	△6.8%
순세계잉여금(교통관리계정)	136,301	36,301	100,000	33.6%
기타회계 전입금(일반회계 일반전입금)	-	18,000	△18,000	△100%
기타회계 전입금(일반회계 법정전입금)	255,717	333,113	△77,396	23.2%
재정투융자기금예수금	145,900	245,900	△100,000	40.6%

나. 세출예산안

〈증액 내역〉 : 1건, 74억 4백만원

- 법인택시 업체 긴급 경영개선비 지원 74억 4백만원

〈감액 내역〉 : 1건, △1,028억원

- 시내버스 재정지원 △1,028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제2회 추경예산액(A)	2020년 기정예산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
총 계	1,273,469	1,368,865	△95,396	△7.0%
시내버스 재정지원	170,512	273,312	△102,800	△37.6%
코로나 19로 인한 법인택시업체 긴급 경영개선비 지원	7,404	-	7,404	순증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가. 세입예산안

〈증액 내역〉 : 없음

〈감액 내역〉 : 2건, △379억원

- 모집공채 △75억원
- 기타회계전입금(도시개발회계) △304억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액(A)	2020년 기정예산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
총 계	194,411	232,311	△37,900	△16.3%
모집공채	151,100	158,600	△7,500	△4.7%
기타회계 전입금(도시개발회계)	-	30,400	△30,400	△100%

나. 세출예산안 : 별도 계상내역 없음

4.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가. 세입예산안 : 별도 계상내역 없음

나. 세출예산안 : 별도 계상내역 없음

5. 도시개발특별회계

가. 세입예산안 : 별도 계상내역 없음

나. 세출예산안

〈증액 내역〉 : 없음

〈감액 내역〉 : 1건, △22억 45백만원

- 총무로(돈화문로) 도로공간 재편

△22억 45백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액(A)	2020년 기정예산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
총 계	76,824	79,069	△2,245	△2.8%
총무로(돈화문로) 도로공간 재편	500	2,745	△2,245	△81.7%

Ⅲ.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1. 총괄

- 이번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액의 경우 기정예산 1조 7,570억 2백만원 대비 △1,332억 96백만원(△7.6%)이 감소한 1조 6,237억 6백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의 경우 기정예산 3조 2,004억 85백만원 대비 △1,934억 37백만원(△6.0%)이 감소한 3조 70억 48백만원임

-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의 경우 별도 계상내역이 없고,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5,523억 9백만원 대비 △957억 96백만원(△17.3%)이 감소한 4,565억 13백만원임

-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1조 6,769억 92백만원 대비 △1,332억 96백만원(△7.9%) 감소한 1조 5,436억 96백만원이고,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2조 6,481억 76백만원 대비 △976억 41백만원(△3.7%)이 감소한 2조 5,505억 35백만원임

2. 회계별 검토의견

< 일반회계 >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별도 계상내역이 없으며.
-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5,523억 9백만원 보다 △17.3% 감소

(△957억 96백만원)한 4,565억 13백만원이며, 주요 변동내용을 살펴 보면

- 감액사업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180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773억 96백만원), 거리가게 적치물 개선관리(△4억원)으로 3건이며, 증액사업은 없음

< 교통사업특별회계 >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조 3,946억 2백만원 대비 △953억 96백만원(△6.8%) 감소한 1조 2,992억 6백만원이고,
-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3,688억 65백만원 보다 △7.0% 감소(△953억 96백만원)한 1조 2,734억 69백만원이며, 주요 변동내용을 살펴보면
 - 감액사업은 시내버스 재정지원(△1,028억원) 1건 감액이며, 증액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법인택시업체 긴급 경영개선비 지원(74억 4백만원)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323억 11백만원 대비 379억원(△16.3%) 감소한 1,944억 11백만원이고,
- 세출예산안은 별도 계상내역이 없음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별도 계상내역이 없음

< 도시개발특별회계 >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별도 계상내역이 없으며,
-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90억 69백만원 보다 $\Delta 2.8\%$ 감소 ($\Delta 22$ 억 45백만원)한 768억 24백만원이며, 주요 변동내용은
 - 총무로(돈화문로) 도로공간재편($\Delta 22$ 억 45백만원) 1건 감액이며, 증액사업은 없음

3. 주요 단위사업별 검토의견

< 세입 >

□ 교통사업특별회계 내 일반회계 일반·법정전입금(사업별 설명서 p.2306)

- 동 예산안은 도시교통실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삭감분(953억 96백만원)에 대해 같은 회계의 세입예산 중 일부를 감추경 편성함으로써 원활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삭감(1,028억원)과 코로나19로 인한 법인택시업체 긴급 경영개선비 지원(74억 4백만원) 예산 신설에 따른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소에 따라 일반전입금 180억원, 법정전입금 773억 96백만원을 감액하는 것임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법정전출금, 일반회계 일반·법정전입금】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일반회계					
사업명	기정예산	금회증감	사업명	기정예산	금회증감
			합 계	552,309	△95,796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	18,000	△18,000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유가보조금)	333,113	△77,396
			거리가게 적치물 개선관리	2,200	△400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명	기정예산	금회증감	사업명	기정예산	금회증감
합 계	632,730	△95,396	합 계	1,368,865	△95,396
일반회계 일반전입금	18,000	△18,000	시내버스 재정지원	273,300	△102,800
일반회계 법정전입금 (유가보조금)	333,113	△77,396	코로나19로 인한 법인택시업체 긴급경영개선비 지원	-	7,404
순세계 잉여금	35,717	100,000			
재정투융자기금예수금	245,900	△100,000			

- 다만, 일반회계 전입금 중 법정전입금은 유가보조금으로 관련 지침¹⁾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안분비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로 보내는 금액임을 감안할 때 2020년 책정된 유가보조금 예산²⁾집행에 차질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코로나19 긴급지원자금 확보를 위한 시급성과 추경예산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간 내부거래로 인해 유가보조금 세입·세출간 불균형³⁾이 발생한 것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정운영 부담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1)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교통부)

제7조(유가보조금의 안분 및 조정) ① 제4조에 따른 유가보조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세수 전망액으로 안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가보조금 안분 및 납부절차 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유가보조금

가. ~다. (생략)

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34조에 따른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울산광역시 시장)는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 받은 자동차세 징수세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안분비율대로 매월 관할관청에 납부한다.

③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안분액의 범위 내에서 세입·세출 예산편성 등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연도의 유가보조금 집행실적 및 추가 소요액 등을 고려하여 관할관청별 유가보조금 안분비율을 재조정할 수 있다.

2) 운수업체(택시·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 '20년 예산 299,147백만원

3) '20년 교통사업특별회계 유가보조금 관련 세입·세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세입				세출			
구분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구분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일반회계 법정전입금 (유가보조금)	333,113	<u>255,717</u>	△77,396	합계	333,113	333,113	
				운수업체(택시·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299,148	<u>299,148</u>	-
				운수업체(버스) 유가보조금	33,966	<u>33,966</u>	-

□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사업별 설명서 p.2306)**

- 동 예산안은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세입이 1,000억원 삭감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추가경정세입예산으로 1,000억원 편성함으로써 원활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뺀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⁴⁾을 의미하고,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으며, 추경예산의 중요한 세입재원⁵⁾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
- 현재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등에 관한 결산’이 진행 중⁶⁾인 시점에서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수입 발생을 전망하여 이를 바탕으로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임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추계)
186,786	113,986	150,324

4) 「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2. 「지방채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5)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하여야 한다.

6)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의결(2020. 2. 21)된 이후 결산 진행중

- 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 경제 피해복구가 시급한 점을 감안하고,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와의 질의회신⁷⁾을 통해 이와 같은 세입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점을 고려할 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있어 큰 문제는 없다 할 것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감소가 국세·지방세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인하⁸⁾로 세입목표가 달성하지 못할 경우

현재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자칫 기존 사업 예산의 추가 조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재정투융자기금은 관련 법령 및 조례⁹⁾에 따라 특별회계 및 타

7)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290('19.8.16)

전년도 세입과 세출 처리상황을 고려하여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수입 발생이 전망된다면, 지방재정 법령에 따라 당해 연도 본예산의 세입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임

8)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91회 임시회('20.2.28), 행정자치위원회)

제26조(대부료의 요율)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재산 평정가격의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립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역의입목, 임산물가격을 대부료에추가하여 징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산관리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심각단계위기경보가발령된경우약정 한대부료의요율을재산평정가격 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9)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지하철·도시고속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조성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2.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 서울특별시가 직접 설치·경영 또는 설립한 공기업으로 용자
3. 구·동청사, 구민회관 등 자치구의 영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용자
4.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금 용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용자
5. 지방채·예수금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원리금 상환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도시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공사 및 기금 등의 효율적 투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시 기금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을 삭감하고 늘어난 기금을 긴급재난지원금 확보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이 줄어든 상태가 지속될 경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부족으로 인한 세입·세출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향후 예산 수립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모집공채, 기타회계 전입금(도시개발) (사업별 설명서 p.2306)

- 동 예산안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모집공채 75억원, 기타 회계 전입금(도시개발) 304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는 같은 회계를 사용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삭감(379억원)¹⁰⁾에 대해 같은 회계의 세입예산 중 모집공채 및 기타 회계 전입금을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원활한 재정운영을 도모하자 하는 것임

6.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1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삭감내역

(단위:백만원)

사업명	증감	사유
합계	△37,901	
동부간선도로 (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3,503	연내 개통 목표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 물량 조정에 따른 감액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9,600	'20년 개통에 차질 없는 일출고선 구간 감액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건설	△10,000	설비공사 착공시기 미도래로 공사비 감액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4,798	사업비 분담을 위한 기재부, 국토부간 총사업비 조정으로 금년도 공사비 감추경

- 기타회계 전입금(도시개발) 삭감(304억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서울시가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에 전출 규모를 조정함에 따라¹¹⁾ 세출 감액사업에 의한 세입 조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세입부족으로 인한 세입·세출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향후 예산 수립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세 출 >

□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별 설명서 p.847)

- 동 사업은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운송수입금공동관리제¹²⁾로 운영됨에 따라 운송수입 부족액 보전을 통한 버스업체 경영 건전성 강화 및 운송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2,733억 12백만원을 편성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민생지원금 마련을 위한 자금 확보의 일환으로 1,028억원(37.6%)을 감액하는 것임
- 서울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확보 차원의 감추경은 필요할 것임
- 다만, 서울시는 감추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부족분을 민간자금 조달방식으로 우선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책 마련을 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11)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사업별 설명서 p. 1647)

-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조정 : △114,600백만원

12) 시내버스 운영에 따른 총비용과 총수입을 비교하여 비용부족분에 대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방식

이와 관련하여,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004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예산편성 부족을 이유로 전액 지급되지 못한채 매년 이월분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¹³⁾을 위배할 소지가 있음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하였음

[연도별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

(단위 : 억원)

년도	'04년 현기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 재정소요액 (C=A+B)	1,246	2,707	2,556	2,309	2,729	3,391	3,578	4,882	5,123	5,271	6,211	6,227	5,907	5,581	5,491	3,532
당해연도 부족분(A)	1,246	2,277	2,070	1,703	2,056	2,556	3,087	3,204	2,465	2,802	3,283	2,554	2,192	2,445	2,842	3,443
전년도 누적부채(B)	-	430	486	606	673	835	491	1,678	2,658	2,469	2,928	3,673	3,715	3,136	2,649	89
재정지원 예산액(D)	816	2,221	1,950	1,636	1,894	2,900	1,900	2,224	2,654	2,343	2,538	2,512	2,771	2,932	5,402	2,915
누적부채 (E=C-D)	430	486	606	673	835	491	1,678	2,658	2,469	2,928	3,673	3,715	3,136	2,649	89	617

- 특히, 서울시의회와 감사원에서는 서울시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준공영제 예산 부족분을 버스운송사업조합 명의를 대출¹⁴⁾을 통해 충당하도록 하고 대출금(이자포함)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버스업체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¹⁵⁾한 바 있고,

13)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14) 연도별 대출 운용 현황(서울시 내부자료)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299,463	35,654	115,825	125,317	111,537	255,168	286,137	213,383	155,832	610
대출잔액	1,272,035	35,600	114,955	121,669	109,696	250,631	279,730	206,402	153,352	-
대출이자	27,428	54	870	3,648	1,841	4,537	6,407	6,981	2,480	610

15)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통보(2014,12,17, 감사원)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장은 ① 버스운송사업조합 또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명의로 대출받아 충당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보조금 미지급금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② 앞으로 필수적 경비인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보조금을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편법으로

2018년 추가경정예산¹⁶⁾을 통해 버스회사 누적부채를 해소하여 시 부채비율 감소 및 재정 건정성을 도모한 바 있음

-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금번 감추경을 통해 또 다시 조합을 통한 민간자금 조달을 확대하려는 것은 그간의 감사원 지적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부채절감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드는 조치로 비춰질 우려가 있음
- 아울러, 금번 감추경으로 인해 늘어난 누적부채만큼 내년도 예산 수립에 추가편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21년 예산 수립시 관련 부서간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대출과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시내버스 재정지원 계획]

(단위 : 억원)

연 도	'19년(전망)	'20년(전망)		'21년(전망)	
		당초	조정	당초	조정
총 재정소요액(C=A+B)	3,532	6,661	6,661	7,196	8,224
당해연도 부족분(A)	3,443	6,044	6,044	3,268	3,268
전년도 누적부채(B)	89	617	617	3,928	4,956
재정지원 예산액(D)	2,915	2,733	1,705	-	-
누적부채(E=C-D)	617	3,928	4,956	-	-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16) 2018 시내버스 재정지원 내용 (2018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 중)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540,212	265,012	275,2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	12	-	
운수업계보조금	540,200	265,000	275,200	◦ 시내버스 재정지원 275,200

□ **코로나19로 인한 법인택시업체 긴급 경영개선비 지원(사업별 설명서 p.851)**

- 동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업수익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4억 4백만원(최대15만원×총2회)¹⁷⁾을 신규편성한 것임

- 서울시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도 기준 매출액 2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5,740억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으나,

택시운수종사자 중 개인사업자인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는 대상에 포함되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택시회사 피고용인으로 분류되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실정임

-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택시운송수입금은 30.7% 감소하였고, 운수종사자 감소율은 전년 대비 17.5%¹⁸⁾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운수종사자의 수입급감으로 인한 어려움은 커지고 있는 실정이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부산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례¹⁹⁾를 감안할 때, 서울시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

17) 225개 택시회사 운전자 24,680명 × 최대 15만원 × 2회 = 7,404백만원

18)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사업 사업별설명서 자료

- 코로나19 발생 전 대비 운송수입금 30.7% 감소

- 운수종사자 감소율)17.5%, 5,200여명) : [’19.12] 29,922명 → [’20.4] 24,680명

19) [지자체 긴급생계자금 지원 사례]

- 택시운수종사자(1인당) : 부산 50만원, 충남 100만원, 전남 50만원, 성남 40만원 등

대한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 할 것임

- 다만,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운송수요 급감으로 마을버스, 공항버스 및 전세버스 등도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 및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형평성 문제 유발과 함께 다른 업계의 지원 요구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임

또한, 동 사업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 서울시와 택시회사가 3대1 매칭으로 지원하는 형태임을 감안할 때, 서울시 지원금 외에 택시 회사 부담이 명확히 이루어지는지 확인·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사업별 설명서 p.854)

- 동 사업은 시민의 보행권과 거리가게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거리가게허가제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22억 81백만원 중 집행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사업비 4억원(17.5%)을 감액하는 것임
- 동 사업은 '20년 거리가게허가제 특화거리 조성 3개소²⁰⁾, 소단위 거리가게허가제 사업 5개소²¹⁾ 내외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소단위 거리가게허가제 사업의 경우 '19년도 수요조사를 통해 2개소만 선정됨에 따라 사업대상지 선정, 자치구 및 주민 협의 등의 기간을 고려할 때 미선정된 부분의 사업비 일부를 감추정하고자 하는 것임

20) 총 사업비 1,480백만원(시비 6, 구비4) :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신대방역 주변(1,000백만원), 은평구 연서시장 주변(300백만원), 송파구 새마을 시장주변(180백만원)

21) 총 사업비 620백만원(전액시비) : 강남구 언주로 508 부근(110백만원), 서대문구 이대역 부근(100백만원), 3개소 미선정(410백만원, 추가 공모필요)

- 서울시의회에서는 예산편성 당시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부터 대상지 선정, 설계·공사에 이르기까지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²²⁾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추경하는 것은 사업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예산편성전 충분한 수요조사 및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사업대상지 선정 및 소요예산을 산출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2) 2019 회계연도 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p62, 제290회 정례회 2020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p28~29